

제426회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일(수)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4)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4)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6)

상정된 안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3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16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16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16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16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16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6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0)	16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4)	16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16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5)	16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중한 자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1소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률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민생과 자본시장 공정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입니다.

상법은 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투명한 자본시장 그리고 불합리한 회사 경영구조, 주주 이익의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고 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제 환경을 만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원만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광규택·장경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규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지금 1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장경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법안1소위에 오게 돼서 기쁘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광규택·장경태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10시05분)

○**소위원장 김용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앞서 기존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자료 의사일정 제1·2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관련 유상범 의원안, 임미애 의원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출입국관리법 2개의 개정안은 밑에 있는 조문대비표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외국인 도입·체류 관리 등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교표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과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지자체 등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등 채용 개입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비교표와 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고요.

8페이지로 가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법무부에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2개 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등을 법률에 명문화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정책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를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2개의 개정안은 모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협의체 운영이 법무부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등 다부처로 의견을 취합해서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는 점과 그리고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결정 등이 지자체에 특히 파급효과를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했을 때 관련돼서, 이것은 아주 미소한

챙점인데요. 타 위원회 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농해수위에 임미애 의원 발의로 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근로자 배정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으로 넘어가서 외국인 계절근로를民間 영역에서 담당, 전문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하는데 그런 관리에 있어서 위법이 있을 때 지정취소 또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데 비용 지원하는 규정입니다.

2개 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을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근거를 법안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상법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임미애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사유와 청문 실시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에 대한 법률 규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규정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 사유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임미애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임미애 의원안의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 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들도록 구체적으로 부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등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문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간단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청문실시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임미애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 시 청문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행정절차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도 청문이 가능합니다마는 행정절차법으로만 규정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개별 법에서 규정한다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 입법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임미애 의원안에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 직접 청문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도 법제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설정해서 그 업무 범위를 어느 정도로 부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개 개정안의 공통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자체와의 MOU를 맺을 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양 법안에 있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안이 추가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통역 지원이 있고요,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 관리 등이 있고 그리고 계절근로자 사용자의 인권침해 여부라든지 근로장소 이탈 여부에 대한 조사를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법무부는 통역 지원은 가능하

지만 고용·노무 관리, 사용자의 인권침해 조사 여부 등은, 밑의 박스에 정부 의견이 살짝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나 국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할 일은 아니라 는 취지로 그것은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설치·운영 관련인데요, 이거는 문구의 차이라서 유상법 의원안처럼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 자격 없는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와 그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전문기관이 아니고는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발, 알선까지는 괜찮은데 ‘그 밖의 채용’이라는 것이, ‘그 밖’이라는 문구가 채용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밖의’ 표현은 빼는 수정안을 별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법정형 수준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조금 세다는 의견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요. 2번의 법정형 수준을 보면, 입법례를 보면 출입국관리법의 예를 따라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 한 사람의 고용 알선·권유하는 경우를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입법안을 내셨는데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상 보면 권한이 있는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등에 개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과 흡사한 사례가 아니냐 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좀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양벌규정이 없는데요. 양벌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은 아무래도 출입국관리법 등에 보면 직접 행위자 외에 그 위에서 조금 더, 배후라든지 더 큰 책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개인이나 법인에게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그 추가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3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은 유상법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두었고요, 임미애 의원안은 1년을 뒀는데 이것은 정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기관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42개 지자체에서 연간 9만 5000여 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시행령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

로 이것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내부지침으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절차의 어려움과 전담 공무원의 부족으로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근로자의 선발·입출국·체류·교육 등의 지원 업무에 대해서 지자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계절근로자의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계절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제재가 곤란하므로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전문위원께서 마련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도 수정의견에 대한 입장은 따로 말씀 안 주셨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규정 관련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에게 처벌과 행위태양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십니다만 법무부에서는 징역 3년에 처하고자 하는 그 안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그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차관님께 하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제19조의5, 여기에 유상법 의원안이든 임미애 의원안이든 동일하게 법무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두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상법 의원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임미애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체계상으로 본다면 시행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니까 그와 관련된 기관의 지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무부령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 법무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의견은 들어서 법무부령에 포함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고.

지금 수정의견 중에서도, 9페이지에 보시면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두는 것도 유상법 의원안과 임미애 의원안은 다 법

무부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책협의회 운영 이런 것은 법무부령으로 해서 운영하면 보다 더 탄력성 있게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대통령령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법무부의 의견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 원안은 법무부령으로 규정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질의 관련해서 협의체가 다수의 부처로 구성되고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크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부처가 관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연한 대처와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법무부령으로 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관 협의회 관련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서영교 위원** 제가 질문……

○**소위원장 김용민** 예.

○**서영교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금방 법무부령과 대통령령의 차이가 다양한 부처가 함께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부령으로 할 때는 기관은 협의를 한다지만 임의적인 수준에 그치고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다른 부처의 참여가 거의 필수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하면 다른 부처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협의를 공식화하는 의미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의견입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대구·경북이나 이런 쪽을 다니면서 계절근로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계절근로자가 지금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본 통계로는 올해 9월까지 한 7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한 7000 정도였다가 올해 9월까지 7만 5000 정도…… 5만 7000인가 7만 5000인가 그런 정도로 보면서 계절근로자가 되게 많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위원님, 한 5만 7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25년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이 136개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7만 4689명이니까 약 7만 5000이네요. 이게 25년, 올해 9월에 7만 5000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가면 계절근로자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제가 저희 보좌관 통해서 좀 물어보라고 했더니 온갖 브로커가 개입해서 임금 일부를 잘취한다든지 아니면 인신매매가 있다든지 이런 사례

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무부차관님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여러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금 대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인신매매에다가 임금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게 법으로 처벌이 안 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현재 명확한 제재 근거가 출입국 관련된 규정에 없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우선 들었던 이야기로는 예를 들면 베트남 분이 대한민국으로 결혼을 해서 왔고 그분이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가 2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인원으로 계절근로를 한 3개월 정도 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20명은 확보해 줘야 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10명 정도로 줄이려고 한다라고 해서 법무부랑 이야기를 했더니 법무부는 ‘새로 결혼해서 오는 사람은 10명 정도로 하고 농협 등의 기관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어떻든 저는 이것을 법적 근거로 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현장에서 느낀 임미애 의원안에 적극 동의하고.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라든지 지자체 곳곳이 함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계절노동자로 외국인노동자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라고 느끼면서도 대한민국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일을 못 해요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친구가 이자카야라고 하는 음식점을 했는데 다 망했답니다. 그래서 잘하던 친구가 망하고 나니까 집 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은둔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은둔형이 많아서 일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지방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지자체장에게,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그 시기에 모두 나오세요. 농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 ‘비용을 주는, 돈을 주는 농활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같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서 지방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러는 것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보고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농활로 사람을 파견하고 그때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5일, 일주일만 갔다 오면서도 돈을 벌어 오는 그런 근로 농활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번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같이하면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법무부에서 아까 관계부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

한 말씀만 하시고 법무부 안이든 수정의견이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하셨고 또 조금 전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소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밝히고 계신데.

우리가 통상 부령으로 할지 대통령령으로 할지를 정할 때 있어서 그것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 여러 부처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 보면 기관을 지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에 관한 아주 기계적인, 그리고 부처 내부의 업무 기준에 관한 것을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계절근로자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부처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부처의 의견을 들키도록 되어 있으면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부령으로 정할지만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이 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국민의 권리·의무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내부적인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서 굳이 대통령령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통령령, 부령을 나누는 기준에 의한다면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하되 저는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수정의견으로 하더라도 수용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법을 만드는 체계상 부령이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이 길어지는는데요. 가능한 오늘 오전 중에 회의를 마치면 좋겠지요, 위원님들? 거기에 맞춰서 압축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간단히만 하나……

○소위원장 김용민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성윤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서요.

○주진우 위원 먼저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차관, 서영교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9월…… 지금 현재 7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왔는데 현재 이분들은 누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실정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여기 개정안에 보면 지원기관으로 기관, 단체 그리고 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 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넣은 것 같은데 누가 담당을 하고 있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현재로서는 이 법에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고요, 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자자체에서 이 많은 사람을 다 하고 그럽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질적인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윤 위원 어떻든 7만 명이라는 인원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자체가 다 알아서 각자 이렇게 다이다이로 한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수행하는 업무가 지자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지자체들이 잘하던 것을 갖다가 법인이나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좀 더 체계화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브로커가 많이 발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협이라든가 법인에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그 설정이 어떤지……

○법무부차관 이진수 할 수 있으면 출입국본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용어 중에 ‘계절근로 프로그램’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요.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무슨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출입국관리법에 많이 있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이성윤 위원 우리 한글로는 못 바꿔요?

○소위원장 김용민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그 당시에 그렇게 입법이 됐는데 그 것은 나중에 국어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기관 지정으로 기관, 단체, 법인 말했는데 기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출입국관리법에 기관이라는 정의가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기관이라는 정의가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특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라고 일단 지정은 되어 있고요. 그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규정에도 그런 비슷한 용례로 그렇게 기관이라고, 단체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이성윤 위원 단체나 법인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관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출입국관리법 39조 2항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은 보통 비영리단체나 법인,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법인이 아니고 학교나…… 저희가 단체, 법인으로 좀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까지도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는 용어를, 이미 쓰고 있는 용례입니다.

○이성윤 위원 법에 기관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근로장소 이탈 여부, 인권침해 여부, 근로계약 외의 활동에 관한 조사권을 전문기관에 주자는 의견이 임미애 의원안인데 그런데 법무부 의견

은 국가기관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출입국관리 직원들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이 한다는 겁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지금 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할 수 있나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합동으로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 해경하고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체 조사를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거나 조사를…… 이분들이 실정을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이성윤 위원 이분들은 전혀 이 부분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면서도 지원만 하고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될 수가 없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그러니까 지정된 민간 기관, 단체에 이렇게 조사하거나 처벌을 전제로 해야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전제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국가기관이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개정안이 나온 이유가 국가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들이라는 게 1년 내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있다 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지금 최대 8개월까지……

○이성윤 위원 그러면 돌아간 후에 국가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을 신고하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 그다음에 국가기관의 손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뭘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국가기관 책임이라 해 놓고 국가기관이 실제로 관리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니예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법을 이번에……

○이성윤 위원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외국인근로자 7만 명, 많게는 9만 명 될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침해라든가 브로커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 할 거예요? 출입국관리 직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저희……

○이성윤 위원 지방에 가 보면 계절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인권침해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자체와 저희 관할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청이 매해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식별지표 등을 활용해서 전수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출입국이……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했다는데, 9만 명 7만 명이 매년 왔다 가는데 인권침해 여부, 근로장소 이탈 여부, 근로계약 외의 활동 여부, 그 외 허가조건 위반 여부 조사한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매년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저희가 이것은 사례 있을 때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

○**이성윤 위원** 국가 책임이라 그러는데 몇 건 했느냐고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얼마만큼 단속을 했고 얼마만큼 적발을 했고 얼마만큼 개선했는지 그런 자료 있어요? 말로만 국가 책임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야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저희가 단속·적발 실적은 계절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이성윤 위원** 아니, 국가 책임이라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문제없습니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절근로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브로커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통계도 잡고 저희가 그렇게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근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야 더 잘할 수 있지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건 다른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잖아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에 계속 나는 건들이 있는데요. 그 건들에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보시면 여권을 강제로 보관한다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을 강제로 시켜서 외부에서 원리금을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착취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법을 찾지 못해서 불송치나, 수사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성윤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그것 처벌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아니, 전문기관이 아니라 브로커 처벌 조항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법률안의 개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가 말로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입국관리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걸 다 국가 책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계절근로자가 왔다 갔는데 실적도 못 내놓으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법무부차관님, 이게 지금 법무부령으로 하는 게 적정하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적정하냐 이 문제인데요. 출입국관리법의 체계랑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들을 봤는데 법무부령으로 규정한 게 한 69군데 정도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이 92개 정도 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로 출국금지라든지 강제송환 그다음에 강제출국 같은 어떤 불이익한 처분,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증 발급이라든지 외국인등록증 발급처럼 증명서를 발급해서 공신력을 부여할 때도 역시 예측 가능성을 부담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절근로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이 절차 규정이면서 또 그때그때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법무부령이 대통령령보다는 규정 체계가 적합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의견이 정확히 있는 것입니까? 규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규정 체계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가 현상에 맞게 대응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의견처럼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모범에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법무부령으로도 충분히 관계기관 협의와 논의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정책에 대한 유연한 시행과 대처를 위해서 저희는 법무부령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면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니 대통령령으로 하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규정 체계랑 맞춰야 되는데 임시적인 조치와 위원회의 위상이나 내용들로 봤을 때 다른 위원회 대비로 대통령령으로 올리는 게 이 규정만 좀 튀는 것 같고.

또 특히 그 점도 있어요. 만약에 위원회를 유지하면 그 위원회에 외부 위원들도 들어가면서 다른 부처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현재로서는 5개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위원회에 각 부처의 위원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소통함으로써 사실 거기서 의견을 조율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법체계와의 규정 체계 때문에 저는 법무부령이 더 맞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역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무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때문에 이 논의를 미룰 이유는 없는데 실제 규정 체계만 딱 정확히 보더라도 유사한 규정에 있어서는 전부 다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법무부령이 조금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제 좀 정리를……

꼭 말씀하셔야 됩니까?

○박균택 위원 아니, 꼭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 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말씀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대충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모아지거나 쟁점이 좁혀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 가 볼까요?

일단 먼저 법무부령으로 할 거냐 대통령령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법무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법무부령으로 하고 법무부가 강력한 의지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럴 때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오셔야 되는데 아마 오늘 처음이시라 그러실 수도 있지만 다음부터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오시는 게 논의가 더 수월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법무부령으로, 기존 발의자들의 원안대로 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수석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전체 조정하는 능력은, 사실 이게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만들 때는 좀 부족했지만 수석전문위원님 하는 게 맞아서 나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소위원장 김용민 좋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시고 나중에 전체회의 때…… 이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빠른 통과를 위해서 얘기하시지만 별 내용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일을 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희는 동의하지만 나중에 별 것 아니면 그렇게 따로 전체회의에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쟁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형사처벌……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 지금 얘기할 거예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하나씩 정리해 나갈게요.

그래서 19조의5도 임미애 의원안은 대통령령이고 수정의견도 대통령령인데 만약에 앞 부분의 프로그램 자체를 법무부령으로 하면 이 부분도 법무부령으로 일단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가는 건……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아까 21페이지에서 인권침해 부분도 전문기관이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삭제하자라는 의견이고 법무부도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아까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혹시 법무부가 복안이 좀 있습니까?

○이성윤 위원 법무부가 명확한 복안이라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국가 책임·권한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일선에서 수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결도 못하면서…… 힘을 빌리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전문기관 지정을 도입하는 단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이 기관에 위임하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일단 그 의견대로,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윤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래도 좀 양보해서 합의를 해주시면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법사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걸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합의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의 정보통신망 설치·운영은 유상범 의원님 안대로 ‘설치·운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24페이지, 25페이지의 처벌을 1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인데 법무부는 지금 3년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3년으로……

○서영교 위원 3년 이하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3년 이하로.

그러면 법무부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양벌규정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집어넣자라는 의견이신데 이 부분도 법무부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양벌규정도 넣는 것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부칙인데 시행시기가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는 6개월 시행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6개월? 그러면 법무부 의견대로 6개월로 하는 게……

○서영교 위원 빨리하는 게 좋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6개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을 다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7)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7)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63)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6)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7)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8)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5)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00)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2)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4)
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0)
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4)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6)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5)

(10시48분)

○소위원장 김용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4건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의사일정 제3항~제16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고요, 11항부터 14항까지는 어제 상정되거나 소위에 직접 회부된 4건입니다. 그래서 총 14건의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24일 소위와 2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제안·의결되었고, 3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건이 다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 심사 시 경영권 보장, 중견·중소 기업을 위한 보완·지원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주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정문 의원안A, 윤준병 의원안, 이정문 의원안B 그리고 신장식 의원안은 재의 요구되어 부결된 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관련 심사 경과는 8페이지와 9페이지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대상 또는 내용으로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

에게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임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될 내용으로 주주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위임 구조를 고려하여 이사는 누구의 수임인인가에 관한 논의와 수임인으로서의 이사는 어떤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느냐에 관한 논의를 구분한 후 주주 보호를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이해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주주의 이익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의 실체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의무 위반 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을 고려할 때 명확성 원칙의 위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내용은 지난 의결 시 총주주와 전체주주의 법적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2월 24일 이정문 의원님이 직접 출석하셔서 그 의미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10페이지 하단은 시행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의결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즉시 시행, 3개월 후 시행, 6개월 후 시행,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되는 안으로 여러 가지 시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십시오.

○장동혁 위원 지금 저희들이 상법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 일반법이고 통과되는 경우에는 그 파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자라는 입장을 어제도 말씀드렸고, 재계의 여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보완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면, 우선 오늘 순서를 보니까 이사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먼저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통과가 됐었고, 물론 재의 요구로 다시 회부가 됐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법문이나 이런 것들만 보면.

그런데 오히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나머지 감사·이사 부분은, 3% 률이나 아니면 집중투표 이런 부분들은 재계의 우려도 크고 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보완 입법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위에서 공청회를 했지만 그 당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쪽으로 사실은 논의가 모아졌었고 나머지 감사, 이사, 집중투표나 3% 률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먼저 하다 보면 이사의 충실의무하고 전자주총은 논의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논의하면서 우리가 일별을 다 하되, 문제점도 그리고 또 보완에 대한 논의도 하되 우선 저는 이사와

감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청회를 해서 충실한 의견을 듣고…… 오늘 논의가 마무리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쨌든 상법 개정이 시급한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보다는 재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다른 보완적인 제도들을 같이 좀 논의해 나가려면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을 먼저 제시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충실의무나 전자주총 하나를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끝나면 그 부분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전자주총까지 같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뒤의 부분들은 공청회를 거치든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오늘 합의되는 부분까지 우선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은 그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다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까지 청취한 다음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정해서 한번 말씀 나누시지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논의됐던 부분은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박균택·윤준병, 이정문 의원안A·B가 지난번에 재의 요구되어 부결된 안과 동일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정안들은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산총액 2조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고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1998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되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사적자치의 원칙 침해 등의 논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경영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위배 논란을 가중시키고 회사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자본 다수결의 원칙과 배치될 수 있고 회사 내부의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가 있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 전원 또는 최소 2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지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적어도 1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괄선출방식에 대한 지적을 감안하여 이 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은 재산권의 일종인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1명 이상의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출은 2020년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당시 기업의 부담 증가 등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로 분리선출제 도입 후 제도개선을 고려할 만한 사회·경제적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39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의무선임 비율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

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고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3페이지의 표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에 대한 개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의무는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2000년 증권 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도입된 것으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증권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중을 현행 사외이사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결격사유가 엄격하여 후보군이 부족한 실정으로 독립이사의 이사회 비중 확대 시 인력풀 형성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해당 조문뿐만 아니라 관련 조문들을 모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44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의 정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결권의 대리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일 이전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의 경우 비대면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리권 증명을 위해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간주되나 상법 제363조제1항 등에서 서면과 전자문서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대리권 증명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투표의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관한 해석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가능하고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는 개최 당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모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될 때 야기되는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물적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하여 분할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이 신설회사로 분리된 후 상장되면서 분할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그 하락의 손실을 소수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물적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물적 분할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모든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만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주주 보호의 필요성,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성, 자금조달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이사의 충실험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실험무 확대와 관련하여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설정한 규정은 회사와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각 주주에 대한 의무 충돌로 오히려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등 형사처벌의 근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일반주주가 승소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상 의무 충돌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1항 직무 규정에서 '주주'를 '전체주주의 이익'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2항은 개별 주주에 대한 공평대우와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인데 충주주, 전체주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개별 주주를 의미하는 '주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행을 1년 6개월 정도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의 실질적 보호 차원에서 주총 소집통지 방식, 대리권 증명 방식과 관련하여 실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법원행정처 말씀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래에 이 부분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가 회사와의 관

계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하지만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지위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한다면 계약상의 책임이 아닌 법정 책임을 새롭게 신설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여러 논의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가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추후 해석과 적용상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무부차관이 제시한 것처럼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제시한 이소영 의원님안이 좀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도 종전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대체형 주주총회 도입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김남근 의원님과 정부에서 개진한 기술적 사유로 인한 결의 취소의 소를 한정적으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보고서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인 집중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인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20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서,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기로 이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정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과 그다음에 선임 비율 확대 관련해서는 선임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명칭을 독립이 사라고 변경하게 되면 기존 사외이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법령에서도 사외이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바꿀 것인지, 그다음에 독립이사라고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안의 제368조 4항은 나중에 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종전의 의견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적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정회해서 좀 정리를 해 보고 다시 토론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관들 의견을 들었으니 토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님, 주식 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과규택 위원님, 주식 하세요?

○과규택 위원 저는 주식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난번 소위하면서도 얘기해 보니까 저희 소위 위원 중에 주식을 하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님은 내가 아직 안 물어봤고.

○소위원장 김용민 안 합니다.

○서영교 위원 안 합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옛날에는 했습니다. 근무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법원행정처 차장님, 다 여쭤봐도 주식 하는 사람이 없고. 저는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펀드를 좀 넣으라고 해서 10만 원씩 그때 넣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넣었다가 반토막 나고 딱 정리했거든요. 아니, 펀드에 넣는데 왜 손해를 봅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은행이 수수료를 떼어먹고, 그 은행이 돈 별게 하고 저는 딱 손해를 보더라고요. 보장했는데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도, 주식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논의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면 약간 모자란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처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손해 보고. 그게 대한민국 주식을 하면 잘 안 된다, 거기에 누군가 조직도 들어가고 정보를 캐낸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 따고 빠지고 돈 따고 빠지고 이러는 세상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주가조작에 손을 대는 많은 사람들을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꼭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주식을 하면 이사는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개미 주주들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이 한마디 상징적인 의미로 회사 오너만이 아니라 좋은 시그널이 돼서, 개미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되고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상법의 큰 의미가 제기되었고 그게 통과되면 주식이 살아난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거부권이 행사됐었고.

그런데 지금 어떻든 6월 3일 이후로 주식이, 코스피가 3100을 뚫지 않았습니까? 3000 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1300원대로 안정화되었고. 이걸 보면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그런데 혹시나 올라갔던 주식이 또 내려오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모든 개미들이 이야기하는 이 상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주주의 이익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지금 5개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사 충실의 의무 그리고 전자주총 그리고 또 집중투표제 의무화—집중투표제도 소수의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해낼 수 있도록—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또 독립이사, 이런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고. 꼭 이게 오늘, 지금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도 의견을 내셨고 우리 수석들께서도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통과되어야 될 시기, 지금 코스피가 어떻든 3000선을 훌쩍 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안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외국에, 미국채에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아니, 이제 안정적으로 되었으니까 국내에 투자합니다’라고 국내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정적·제도적 뒷받침,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지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크게 취지를 본다면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일 건데 분명히 재계에서는 이렇게 법정의무를 새로 부과할 경우에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것이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기대에 불과하다면 재계의 우려, 기업의 우려는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나 또 법무부에서 정말 이렇게 똑같은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문구에 있어 가지고 ‘전체주주의 이익’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우려를 조금 덜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계에서는 아시듯이 배임죄를 면책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요. 또 경영상의 판단 그 원칙을 법에 명문화를 해 주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형법상 배임죄 그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때까지 배임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몇 번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사 충실의무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명문화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이 부분은 계약상 의무를 넘어서 법으로써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사 개개인이 형사·민사적인 책임이 따를 소지가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법에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보시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 논의할 김성원·구자근 의원님의 상법 개정

안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와 같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됐다라는 간주 규정을 두는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해 왔었던 경영판단의 원칙의 조건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것은 또 추정이 아닌 간주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다음 상법 개정안에 저희가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해 가지고, 이사 충실험의무 개정 말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거나 감사 관련된 부분, 3%를 개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이것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이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적인 스탠더드로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이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그런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위원 선임에 관해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면 조금 경과하는 양태를 보고 추후에 이것을 개정할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차관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3% 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한번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말씀하시기 힘들면 다른 분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외국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상사법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상사법무과장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1960년대 이후에 의무화하였다가 지금은 50개 주 중에 한 5개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적다는 사실관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이사 분리선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를 IMF 때 들여오면서 그때 종합적인 지배구조 체계에 대한 검토 없이 IMF 요구 때문에 들여온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분리선출이라는 제도도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주 보호 필요성에 대해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는 일단 이사의 충실험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회사와 이사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있는데 회사와 주주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법정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인가, 어떨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소송으로 갔을 때 예측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주나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기준에 사주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사회가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려면 소액주주한테도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고 해서 문구를 설정해 뒀는데 저는 법원행정처 의견대로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정도의 문구는 들어가야 구체성 있게 소송에서 혹은 규율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별로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시다시피 배당주를 투자하느냐 성장주를 투자하느냐, 각자 생각이 다른 것처럼 어떤 회사에 있어서 성장할 타이밍에서는 배당을 하지 않고 R&D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이익금이 쌓여 있으면 배당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주주의 권리와 보호하게 되면 그 특정 주주와 생각이 다른 몇몇의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소송을 걸었을 때 그게 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느냐, 반하지 않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소액주주들의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조차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그 소송비용까지 전가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IT나 혁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좋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 소액주주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쌓아 놓느냐, 어느 정도는 배당해야 되는 것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소액주주들만이 모여서 소송을 남발할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해 있고 또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지분이 엄청나게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외국 투자자들한테도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런데 외국에서 영업하게 되면 꼭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국내법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외국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논의의 국면은 좀 다르지만 ISD 같은, 우리가 론스타 소송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투여해 가지고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2800억인가 물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고.

또 이게 특허괴물이라고 해서 외국 헤지펀드나 외국 회사들은 굉장히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그것을 오히려 약간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실무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사의 충실험무는 규정을 해서 기준에 상정적으로 일부 회사의

경영자나 사주를 위해서만 회사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확히 하되 기본적으로 소송으로 갔을 때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정도의 문구 혹은 또 다른 문구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구체성 있는 문구가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부분도 역시 외국계 투기 자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발언 기회에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다른 토론……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안1소위에 제가 계속 참여해 왔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또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다시 동일한 주제로 논의하게 된 것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야당 국힘에서 상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오다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참 희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000선을 뚫고 313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미 주식시장에서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액 투자자가 약 144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4900만 명이니까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29%, 30%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이전에도 여러 국민들께서, 특히 주식 투자하는 1400만 명의 소액 투자자가 이 상법 개정안을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국민들 한 분 한 분 보면 운용하는 10만 원 이상 계좌가 약 7637만 개가 됩니다. 국민 1인당 약 1.5개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야당 국힘도 드디어 국민들 요구에 답하게 된 것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법 개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문제가 아니고 속히 개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이사의 충실험의무라든가 전자투표 이 부분은, 전자주총 문제는 일반 거래계에서 주식 거래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집중투표제 또 사외이사직 강화 제도 또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이것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이사의 충실험의무 관련해서 보면 1항은 그대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라고 선언해 주고, 그다음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도 물론 의견을 냈지만 저는 ‘총주주’를 ‘전체주주’로 바꾸면 어떨까 이 정도 의견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재계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데, 소송 남발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회사 경영 간섭을 하고 기업의 정보를 유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2000년도 초반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때 재계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송 남발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식시장 상법을 개정하고 정말 소송이 좀 들어와서 소송 선례가 많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송이 많이 들어올까, 제 경험으로 보면 소송 남발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이사가 돼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이사로 와 가지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배임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계의 주장은 정말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행정처 차장님,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거나 하급심 판례를 보면, 오늘 법무부에서 준비한 그 자료에 보면 서울고법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22다224986 판결 등에서 ‘회사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법 조항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석을 해 왔고.

그런데 지금 이 법조문을 만든다면, 예를 들면 ‘주주의 이익’ 이렇게 한다면 계약상 당연히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는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당연히 계약상 의무가 있는 회사 그리고 결국 주주에 대해서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정의무로 들어갈 텐데 ‘회사 및 주주의 이익’ 이렇게 ‘회사’까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른 의원님들 법안도 대부분 그렇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주주’냐 ‘주주’냐 문구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런 대법원 판례를 보거나 그리고 모든 주주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주주의 이익’이라고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85%의 주주들은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했지만 그로 인해서 일부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결국 ‘주주’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 해석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결국 판례를 통해서 정립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제2항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총주주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전체주주라고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전체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있으면 그 2항 때문에 1항의 주주는 사실상 이사가 부담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험무는 결국은……

예를 들면 100% 모든 주주가 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2항 때문에, 전체주주의 이익 그리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니 그 2항 조항의 해석 때문에 결국은 1항의 주주는 사실상 어떤 문제가 되면 전체주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조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시겠지만?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382조의3의 1항은 총론적 규정으로서 주주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법정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정 책임의 구체적인 의미는 382조의3의 2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문 의원안이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라는 표현을 쓰셨고 지난번에 직접 출석하셔서 총주주의 의미와 전체주주의 의미를 올(all)과 에브리(every)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면 주주에 대한 법정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2항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1항에 넣어 놓고 2항에서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구조가 바뀌어 있을 뿐이지 어느 의원님의 안에 의하더라도 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1항의 원론적인 주주라고 하는 것은 2항을 보게 되면 결국은 전체주주의 이익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저희가 수정의견에서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은 우선 지난번 논의 이후에 이소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의견에 보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기에 그것이 종래의 2항을 반영하는 취지라고 보여져서 저희도 이 의견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습니다.

○장동혁 위원 그리고 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집중투표제에 관해서 이론적인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무부 관계자가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를 강제했지만 결국 지금은 5개 주에서만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교원연금인 TIAA-CREF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 비효율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도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에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지금의 우리 규정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차등의결권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차등의결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황금주같이 외국의 적대적 자본이 잠식해 들어와서 사실은 회사의 경영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도 이런 보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토론을 더 진행하시는데 일단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차관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금 새롭게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회사 이익과 주주 보호에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예를 들면 소위 잘나가고 잘 성장하는 회사가 갑자기 물적 분할하거나 특정 대주주를 위해서 운영되면서, 이사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경우들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깡통 회사가 돼 버리더라, 그래서 주식은 폭락하더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거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체주주의 이익은 결국에는 대주주나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아무런 장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현재까지 회사법의 구조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위임 관계에서 신뢰 관계 내지는 충실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주주를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거를 개별 주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주주로 규정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배려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된 출발점을 지금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고려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남소 가능성은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이런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82조의3의 2항에 보면 이사는 주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제 얘기는 반대를 질문한 건데요.

1항을 ‘회사 및 주주’라고 표현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어떤 소송들이 막 제기됐을 때 법원이 이정문 의원안의 2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남소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법원이 충분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점은 앞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고 판례를 통해서 정착이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만 그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해석과 적용상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주주로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했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가 합부로 물적 분할하거나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 하면서 특정 대주주만을 위해서 부의 대물림을 하는, 그렇게 운영됐던 회사들 때문에 이 얘기가 시작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주주의 이익으로 가면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이사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못 묻는 거 아닌가요? 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는지 안 반하는지가 판단이 애매해져 버리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서 이사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내용을 2항에 규정함으로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주의의무 내용을 좀 더 보충하는 형태로 입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사의 주의의무 내용을 입법을 통해서 좀 특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정문 의원안대로 역으로 1항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고 2항에서 일정 부분 보완 혹은 견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처음에 저희가 이 법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는 방식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문 의원안으로 가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장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주’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2항과 종합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이 판례나 이걸 통해서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차관님, 혹시 적대적 M&A 사건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검사 생활 하시면서도 아마 사건을 많이 다루셨을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큰 회사 사건을 다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제가 변호사 생활 할 때 적대적 M&A와 M&A 사건을 좀 다뤄 봤었는데요. 적대적 M&A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줄 아십니까? 회사의 경영이 투명한지부터 봅니다.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은 회사에 적대적 M&A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기 쉬우니까.

다시 말해서 회사의 경영 상태가 투명하고 제대로 잘 돌아가는 회사라면요, 여러 가지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 장치를 우리가 두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 크게 필요 없이 주주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주주들이 돌아서요. 공격자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적대적 M&A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다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대전제가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변화가 그래도 좀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 논의를 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해서 아직 따로 더 논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3% 률에 대해서 우리 현행법에 보면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나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습니까, 3%를 적용할 때? 그런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합산을 하지 않아요. 꼭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입법 불비 아닌가요? 꼭 이래야 되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논리적인 이유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시지요?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도 3% 률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저도 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서로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차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2항에 규정을 둠으로써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사가 활동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전체주주의 이익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특정 대주주에 대해서만 유리하고 소액주주한테는 불리한 결정을 했을 때 그 규정이 작동하면서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은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정 주주, 그러니까 ‘전체주주의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이성윤 위원님도 의견 개진을 하신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정말 아주 개별적인 침해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제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이것도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냐라는 제소 가능성도 있고 그런 사건에 있어서 결국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이 주주의 이익을 뭘로 볼 것이냐를 평가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명확성이랄지 그다음에 해석과 적용의 명확성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주주의 이익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집중투표제를 지금 현재 안대로 도입을 하면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반대로, 아까 행동주의 펀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행동주의 펀드나 또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더라도 외국계 자본에서 이사가 들어왔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가 없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과거 사례이긴 한데요 2003년도의 소버린 사

태가 가장 이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당시에 3%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소버린이라는 펀드에서—헤지펀드지요—SK 주식을 5개 자회사를 통해서 2.99%씩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가 안 되게 다 매입을 한 거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 법제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용하고 타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4.99%를 가지고 소버린 측에서 이사를 선임하려고 해서 사실 당시에 9500억 정도의—2003년도에 9500억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오 조 정도 규모의 돈 가치를 아마 가질 겁니다—시세차익을 거두고 철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커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안정되고 하다 보면 언제든지 헤지펀드들은 들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지 소로스가 했던 퀸텟펀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파운드화도 공격해 가지고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 화폐도 공격해서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기업 제도는 헤지펀드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소버린 사태 이후로 사실은 아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좀 막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반대로 지금 해외 선진국들은 잘 하지 않는데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선임 제도를 갑자기 도입을 하게 되면 그 도입의 수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런 데 악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제도가 저희 법사위에서 통과하고 법안이 성안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 법안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헤지펀드들로 인해서 손실이 나면 그것은 또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중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랑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현재 1명 정도는 소액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 통상의 감사위원 3명 중에 2명을 이런 식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사실상, 감사위원 하면 이사회와 이사도 마찬가지로 감사위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나 혹은 또 회사의 내밀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 들여다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나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이 기업의 투명성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균형은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청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좀 붙어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사 중에서 중견기업들도 다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주식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또 주식시장의 관계자들 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균형적으로 들어서 제도를 성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위원 빠르게 정리해 주시지요, 이제.

○소위원장 김용민 혹시 더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쟁점별로 조금씩

볼까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해서 이정문 의원안과 법무부의 수정의견 두 가지가 지금 약간 대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상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원안이 이정문 의원안대로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위원** 전체주주나 총주주나 다 주주를 얘기하는 건데 주주라고 하는 말로 통일시켜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로 통일시켜서 그렇게 가야지 이건 주주고 저건 총주주고 저건 전체주주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주에게 충실의무인데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주주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주에 대한 이익에 충실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지, 총은 뭐고 또 전체는 뭐고……

○**장동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이정문 의원님안으로 가되 예를 들면 총주주를 전체주주로 통일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난번에 나름대로 이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원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 전체주주로 통일할 건지만 논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통과시켰던 안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유지를……

○**장경태 위원** 주주라고 명시해 놓고 판례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기존의 이정문 의원안은 1항을 주주로 하고 2항은 총주주,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남소 가능성은 2항에서 조금 일부 막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이렇게 해석하면 남소 가능성 여부는 좀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한 안과 그다음에 기존에 통과됐던 안이 이정문 의원안이니까 이대로 가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혁 위원**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정문 의원님이나 이소영 의원님이나 1·2항을 합치면 결국은 같은 취지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저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팬찮지만 지난번에 이정문 의원님안으로 가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정문 의원님 안으로 가되 총주주, 전체주주를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전체주주로 통일시킬 건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로는 총주주라는 용어를 쓰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까도 기록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정문 의원안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이 정도로 대충 정리하고.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해도 무리는 없으시겠지요?

○**이성윤 위원** 예, 즉시 시행으로.

○**소위원장 김용민** 두 번째가 전자주주총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위원님들의 어떤 이견이나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위원** 시행시기는 이것을 해야 되는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예탁결제원에서는 1년으로 시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소위 때 밝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회의 때는 그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점검한 후에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안 나와 계시지요, 여기에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오늘은 예탁결제원에서는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시지요?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영교 위원** 그때 그렇게 맞추겠다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을 때 빨리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니까 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그때 가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 보더라도 지금 좋은 시그널을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1년으로 하시지요.

○**장동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1년이든 6개월이든 실무적인 문제니까 소위원장께서 예탁결제원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입장 바뀌어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적의 판단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전체회의 때 그 부분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일단 1년으로 정리를 하고 예탁결제원이랑 한번 소통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전체회의 때 6개월을 늘리는 것을 논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하는 게 세 번째였지요?

○**장동혁 위원**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각자의, 양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금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조금 더 논의하자는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들은?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주진우 위원** 이거는 진짜 큰 제도여서……

○**곽규택 위원** 공청회 같은 걸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용민** 공청회를 한번 하자는 입장이시고요.

○**장동혁 위원** 저희도 무조건 반대다 그게 아니라 좀 들어 보시고……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잠시 조금만 더 보류를 해 보고요.

그다음 번 쟁점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분리선임 확대 부분은 1명을 2명으로 늘릴지 아니면 전체를 다 선임할지 문제인데 지금 관계기관 의견은 2명은 팬찮지만 법원행정처는 3명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니, 오히려 이런 논의를 많이 거쳐서 2020년에 분리선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 당시에 1명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가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래요? 여기 문건에는 꼭 그렇지는 않고 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읽혔는데……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3% 률을 보완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입법 불비처럼 보였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입장…… 법원행정처는 상관없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별을 해서 3% 률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따로 의견을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서요.

○장동혁 위원 일단 집중투표하고 감사 분리선임은 그 내용 포함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것은 그렇게 할 건데 3% 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혁 위원 저희들은 일단 3% 률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대신 아까 그런 설득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그게 입법의 불비인지 아니면 이 제도만의 어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한말씀만 보태면……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도 동의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주진우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관계에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관점에서 봐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은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도 확실하게 해소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께서는 3% 률 논의를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진우 위원 예.

○서영교 위원 더 문제는 외국 투자자가 크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3대 은행을 좌우지하고 있는 그런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서영교 위원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거기의 대주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주진우 위원 지금대로라고 하면 더 심해지지요, 그게.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독립이사를 봐 줘야지 되는 거지요.

○주진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하여튼 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분을 2명으로 확대 혹은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고 3% 률을 보완하는 것도 조금 더 논의를 하자라는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겠는데,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위원 조금만 논의하시고, 저희가 전면 반대가 아니니까요.

○이성윤 위원 입법 불비 정도로 보고 논리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이번에 함께해서 통

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게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시그널 아닙니까? 요구사항 아닙니까? 지금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더 선출하는 것 너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회사를 견제하고 잘 키워 나가자는 거지 회사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투명해지고 모두 다 좋아지는 거지, 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 이 상법 자체가 다를 키워 나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굳이 반대만이 아니라 좀 더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경제시장에 시그널이 있을 때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희들도 이것 시간을 계속 끌자는 게 아니라 공청회 해 보자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안이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일반법을 처음 고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일방 처리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합의 처리돼서 국회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의 힘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반대가 아니라, 사실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거쳐서 이 두 문제는 하시고 나머지 이견 없는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오늘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일단 쟁점이 있는지만, 이견이 있는지만 먼저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영교 위원 제가 그냥 자료로 얘기하면 3% 률은 1962년에 국가재건회의에서 나온 건데, 그때 1962년에……

○장동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상황이 다르니까요.

○주진우 위원 저도 한마디만 보태면, 감사위원 3명 중에 2명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감사 파트는 전부 다 외국계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아니, 지금 3% 률 말씀하시는 거라서……

○서영교 위원 3%는 1962년에, 저도 잘 몰라서 역사를 보니까……

○장동혁 위원 속기록에 세 번 써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의 말씀을.

○서영교 위원 역사도 그렇고 또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장난치는 걸 막아야지요. 막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것이다.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정교한 장치들을 좀 두고 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성윤 위원 공청회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그다음 번 쟁점이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도 크게 이견은 따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따로 이견은 없으셨던 것 같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쟁점 기준으로 1번과 2번은 이견이 없이 정리가 된 것 같고요. 3번과 4번은 이견이 있는 상태고, 5번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일단 처리를 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오후에, 아마 지금 여야 간에 협의를 더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다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동혁 위원 위원장님, 7항은 따로……

그런데 7항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반대해야 될지 찬성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7항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용민 7항은 법무부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네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저희는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부분도 아직까지……

○서영교 위원 저희는 검토가 안 되었으니 다음에 보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직접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인 거지요?

○장동혁 위원 그러시지요, 저희도 검토가 잘 안 돼서.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오늘 한 번에 다 의결을 해야지 중간에 의결을 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잠깐 정회를 했다가 쟁점, 이견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조금 더, 아마 여야 간에 논의를 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견 조율 여부를 조금만 더 검토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서영교 위원 오후에 괜찮습니까? 오전에 끝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여야 간에 소통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곽규택 위원 시간은 정하지 말고 일단 정회하시고 추후에……

○서영교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합의된 것부터 통과시키시지요.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표결을 하면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오늘 표결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오늘 마무리 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가능한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돼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견이 없는 대로 일단 정리를 해 놓고 이견이 있는 부분만 따로 조금 더 상의해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은 정하지 않겠지만 대략 한 3시에서 4시 이 정도쯤에 속개한다고 봐 주시고 일정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용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상법 논의를 계속 이어 갔었는데요 지금 여야 간에 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지요?

○서영교 위원 대단하시네요.

○소위원장 김용민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시작은 여야 합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영교 위원 양쪽이 다 너무 애를 잘 써 주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두 간사님.

○소위원장 김용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충실의무는 오전에 합의된 내용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 도입 부분도 오전에 합의한 대로 가는데 지금 예탁결제원에서 나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이따 얘기 다 하고 나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예기간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야 간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쟁점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위원회위원의 전원 또는 2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임하도록 하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가 3% 률을 적용하는데 기존의 다른 감사나 사내이사와 합산하는 방식이 달리돼 있는 것을 감사나 사내이사와 합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맞추는 조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였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제도를 만드는데 추후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었던 3% 률을 보완하는 것은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법무부차관님, 쟁점 하나 또 논의하실 게 있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전자주주총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제542조의14 정의 개념에 관해서 문구를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전자주총의 운영을 위해서 대리권 증명 서류로 전자문서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2항 전자주주총회 도입 부분의 정부안으로 수정을 하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리고 저희가 아까 논의를 하다가 면추기는 했는데 6항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 이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은정 542조의14 제1항 주주총회 정의 부분의 법무부 의견을 검토해 봤는데요. 차이가 있는 것이 개정안은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로 돼 있고 법무부 수정의견에는 그런 의견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법무부 수정의견은 모두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도 이 전자주주총회 정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집지 현장에서 주주총회가 물리적으로 열리기는 하지만 거기에 단 1명도 참석하지 않고 전부 온라인으로 참석했을 때 그것을 병행형 주주총회로 볼 것인가,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개정안은 1명이라도 참석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 수정의견은 현장에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오는 병행형 주주총회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현장대체형 또는 완전자주주총회로 보여서 법무부 수정의견이 개정안과 조금 다른 내용이지 않은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법무부 수정의견처럼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주주의 일부 개념과 주주 개념 관련해서는 나머지 수정사항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주의 일부로 남기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그리고 또 전자통신수단 관련해서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그러니까 쌍방향 통신이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일응 타당한 의견이긴 한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이 표현이 6항에 나오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랑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자통신수단’으로 만약에 표현을 바꿨을 때 이게 혹시라도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현행 허용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다른 방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그게 좀 그렇고요.

전자통신수단이라는 용어는 개정안에 전자주총…… 16페이지 이정문 의원안 A·B의 542조의14 제3항에 보시면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이미 개정안에도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해야 된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수정의견처럼 1항과 3항을 통일해서 규정할 것인가, 개정안처럼 지금 현행에 있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같은 표현을 쓰는 1항을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행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나에 따라 다른데 반드시 법무부 수정의견처럼 해야 되느냐, 그게 더 명확하느냐,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말씀하신 전자적 방식에 관한 것은 전자투표에 관한 부분이어서 이 전자주주총회, 쌍방향 통신, 쌍방향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과 좀 차별을 두기 위함과 또한 통신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방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논거 등을 더해서 전자통신수단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그런데 지금 현행 상법에서는 전자통신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상법에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쓰고 있고.

말씀하신 쌍방향 통신에 대해서 그런 통신이 필요할 때 어떤 용어를 쓰나 저희가 다른

법률을 검색해 봤는데요 전자통신수단이라는 용어를 차용하는 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의료법에 보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그러니까 약간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전자통신수단이라는 걸 꼭 써야 되느냐, 수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체계·자구에 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유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출석하는 것도 전자주총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석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바꾸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그런데 저는 그 우려는 3항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영교 위원 별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논의가 약간 다른 데로 뛰어 버린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45페이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 부분에서 같이 처리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서면투표·전자투표 시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사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4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6항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수정해야 될까요?

○전문위원 이은정 그 부분은 정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요 굳이 같이 의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우리가 2항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오늘 처리를 하면 당장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전자적인 방식들이 보완이 되는 이 규정을 같이 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 안 해도 될까요?

○전문위원 이은정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의 차이는, 즉 현행 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시행령에 따라서 주총 전일까지 가능하고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이 되면 그 차이점은 주총 당일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법무부는 이걸 같이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입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6항과 7항은 추후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1항부터 5항까지는 지금 논의된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탁결제원 혹시 나오셨나요?

○한국예탁결제원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예.

○소위원장 김용민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한국예탁결제원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용민** 아마 유예기간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 소위에서는 1년 유예 기간을 두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오늘은 그 입장이 혹시 변경됐나요?

○**한국예탁결제원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처음의 1년과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에는 약간 변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준비했을 때는 병행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의무화라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 있는 전자투표시스템과 다른 영상 쪽만 붙여서 준비를 하면 큰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 수요면 그냥 이 정도 개선을 해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면 충분히 정책적 지원을 완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최근 이정문 의원님의 안이 정식 안으로 계속 채택이 되면서 의무화라는 부분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확정은 안 됐지만 의무화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약 한 200개사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올해 특정일에 몇 개사나 주주총회를 했는가 확인했더니 약 65개사가 같은 날 동시에 진행을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그냥 수정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데 1년 반 필요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수정안을 마련해 오신 것 같은데 시행은 1년으로 그대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주총과 관련된 부분은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1년보다 조금 더 길 수 있게 이렇게 잡으신 것 같네요?

○**한국예탁결제원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예, 의무화가 적용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총 분산에 관한, 집중화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로부터 도래하는 정기주총까지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 대상 되는 부분만 좀 유예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전문위원님, 혹시 자료 받아 보셨나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소위원장 김용민** 유예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전문위원 이은정** 그런데 상법상 정기주총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2027년도부터 적용하려는 게 의도라면 시행일을 1년 6개월로 하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적용 유예를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김용민** 법무부는 어떻게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1년 6개월로 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위원** 그러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냥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용민**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곽규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어차피 주주총회는 3월 31일 날 주로 몰려 있을 것 아니에

요?

○**한국예탁결제원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예, 3월 31일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고려해 볼 만한 게 임시총회 부분입니다만 27년 1월 1일……

○**소위원장 김용민**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로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미 1년 4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국예탁결제원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최선을 다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이 부분은 유예기간을 202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장님, 한 가지, 아까 배포해 드린 자료 중에 전자주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대리권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전자주총의 취지로 봤을 때 저희 정부안처럼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게 아까 6항을 얘기했던 것 아닌가요? 6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6항 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니까 아까 6항이랑 같이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항의 일부 조항을 가지고 오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용민** 예.

○**전문위원 이은정** 아까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368조의4의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68조 2항의 내용인데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서면이라는 걸 명시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자문서법에 의해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서면에 전자문서가 당연히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상법은 한 13개 조항이 서면과 전자문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상으로 전자문서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를 명기하는 것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데요. 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정부안은 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정하셨고 박상혁 의원안B는 그냥 전자문서만 넣으셨거든요, 서면 또는 전자문서.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뭘 정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전자적 방식으로 대리권 증명을 할 때 명확한 대리권 수여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 명의 등을 통해서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문구를 넣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상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지요?

○**전문위원 이은정** 13개 정도의 조항 중에 단 한 가지 조문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이 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 대리권 증명이 그 정도까지의 사안인지는 그

것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종합해서 얘기하면 2항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지금 말씀하신 368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을 추가로 집어넣을 것인지 이것만 지금 쟁점인 거지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런데 그 2항을 넣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할 것인지 대통령령을 뺄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령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시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냥 전자문서로……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지요. 보니까 상법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도 실무적으로 안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 가지고.

○**전문위원 이은정** 전자문서만 표시하시는 것도……

○**소위원장 김용민** 예, 대통령령 빼고.

○**전문위원 이은정**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렇게 하면, 저희가 6항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 이 부분을 지금 다 논의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368조 2항만 따로 빼서 전자주주총회 도입 부분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은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368조의4는 집어넣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 이은정** 예.

○**소위원장 김용민** 그러면 2항만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달리 이의 없으시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까 유예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1항 충실험무는 즉시 시행이고,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 1일부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3% 률은 1년, 독립이사도 1년 유예기간, 저희 논의했던 대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항 및 제12항은 관련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부분의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회의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곽규택 김용민 박군택 서영교 이성윤 장경태 장동혁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직무대리 김정도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장 이재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